

3. 보철물(Meryland bridge)이 탈락되어 사용한 광중합레진에 대한 보험급여 인정여부

■ 진료내역

○ A 사례(남/40세)

- 주소 : 하악#32-#41 브리지 전치부 탈락(타치과)
- 상병명 : 치과 보철장치의 부착 및 조정을 위하여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(Z463)
- 내원일수 : 1일 ('13.12.24)
- 진료내역 : 하악#32-#41 치아접착 브릿지(일명:메릴랜드브릿지)가 탈락하여 광중합레진을 이용한 보철물 재 부착 실시하고 비급여로 징수 함

■ 심의내용

-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제1편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0장 제1절 차-20(보철물 재부착) 주)항에 의하면 장착된 보철물이 탈락되어 재부착하는 경우는 보철물 재부착(1치당)으로 산정하되, 재료의 비용은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- 동건(M/40세)은 타 요양기관에서 하악 전치부에 장착된 보철물(Meryland bridge)이 탈락되어 '13년 12월 동 요양기관에 내원하여 광중합레진을 이용한 보철물 재접착을 실시한 후 비급여로 징수하였으나, 민원이 제기되어 요양급여항목인 차-20 보철물 재부착(1치당)으로 인정함. 이에, 해당 요양기관에서 이의신청 되어 논의한 결과,
- 제출된 진료기록부 및 전문가들에 의하면 장착된 보철물(Meryland bridge)이 탈락되어 재 부착하는 시술 행위는 현행 급여항목인 보철물 재 부착 시술행위 보다 난이도는 다소 높고 고가의 치료재료(광중합 합착제)를 사용하였으나 신의료기술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임.
- 따라서,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제1편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0장[산정지침](1)항 및 (7)항과 제9장[산정지침](4)항에 의거 처치 및 수술 항목에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처치 및 수술 중에서 가장 비슷한 분류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도록 함에 따라, 동 건은 차-20(보철물 재부착, 1치당)*3으로 인정하고, 급여·비급여 목록표에 별도 고시되지 않은 재료대는 인정하지 아니함.
- 다만, 장착된 보철물(Meryland bridge)이 탈락되어 재 부착하는 행위는 관련 학회에서 수가산정방법에 대하여 건의하기로 함.

■ 참고

- 고정성 치과보철학 원리와 임상, 나래출판사

[2014.12.17. 진료심사평가위원회]